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인터넷 청약 방법

청약 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수원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수도권(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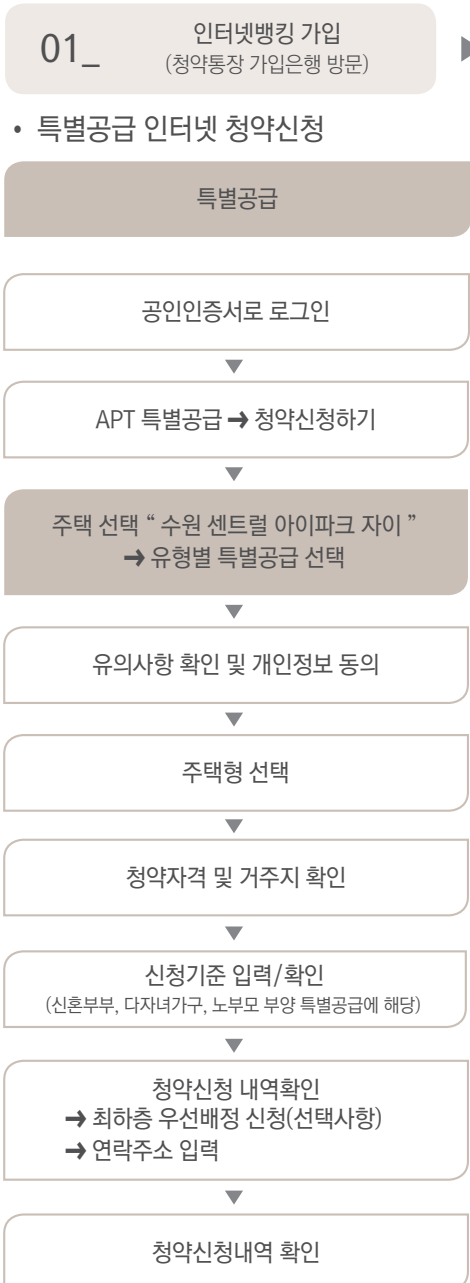


- 1순위 청약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청약 (당해지역 청약: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청약: 수원시 1년 미만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면적별 예치금 이상
[(85㎡ 이하: 수원시 및 경기도 20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 135㎡ 이하: 수원시 및 경기도 400만원, 서울특별시 1,000만원, 인천광역시 700만원)]
- 1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1주택을 소유한 세대(세대원 포함)의 세대주)
- 1순위 청약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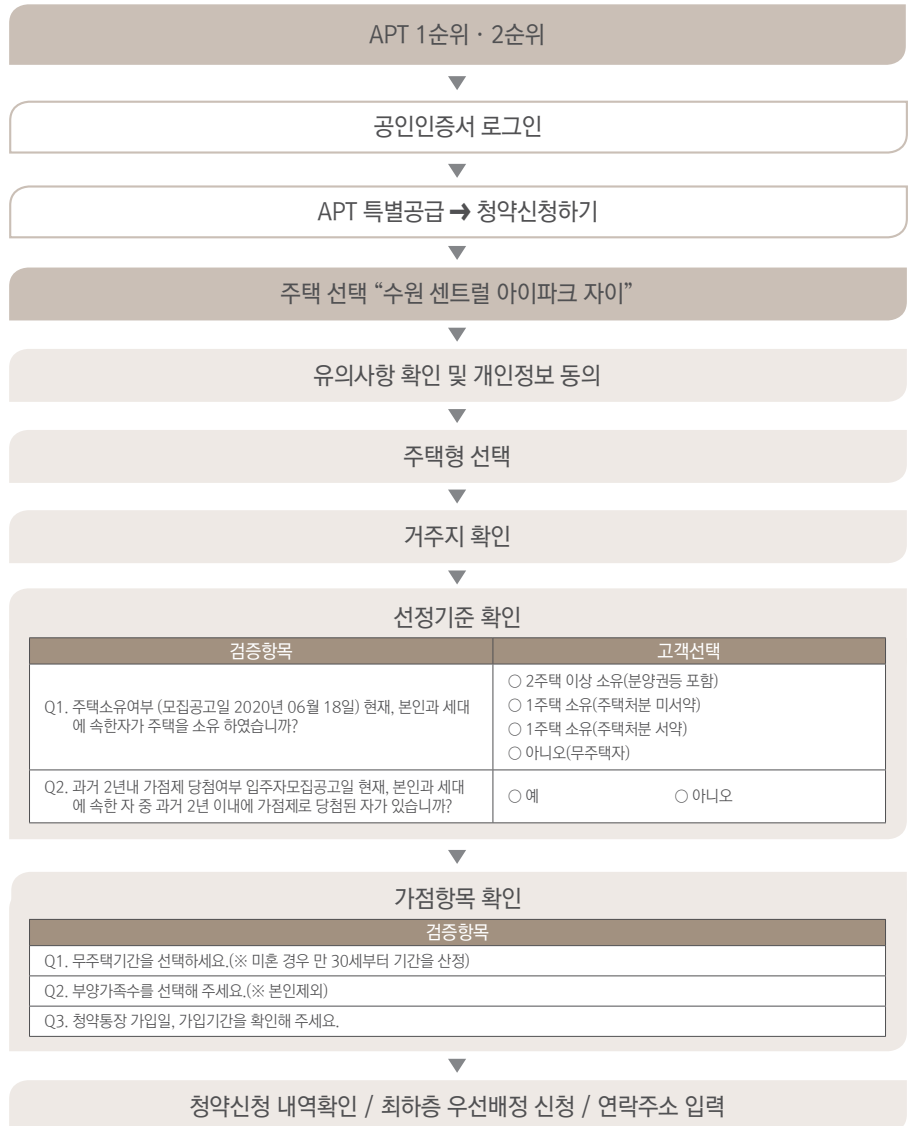
인터넷 청약 접수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02_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부여 받음

• 일반공급 1순위 인터넷 청약신청



※ 상기 인터넷 청약 절차는 청약 가상 체험관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청약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너무나도 쉬운 청약 관련 TIP!

□ 청약 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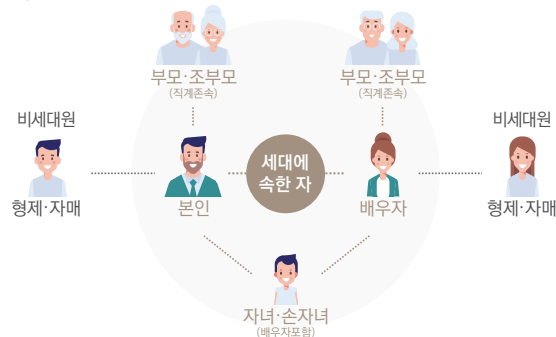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75%	25%
85㎡ 초과	30%	70%

※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점수 순으로 순번을 정하오니 가점제 점수 산정에 유의 바랍니다.

※ 추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될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가점제 유의사항

가점항목	가점구분	이것만은 꼭?
무주택 기간 (총 3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보양권 등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세대원의 범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함.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함.(특별공급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로 계산해야 됨.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는 “0” • 잘못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6.18(목) 기준 1990년 06월 18일 생의 경우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으로 입력(0)
부양 가족수 (총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 (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부양가족 산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산정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임 • 잘못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A씨의 사례 - 입력내용 :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부양가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0)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 X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1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통장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의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알면 너무나도 쉬운 청약 관련 TIP!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 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② 청약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과거주택 소유여부	30세이전 혼인여부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험 無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자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자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 모집공고일	
주택 소유 경험 有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자	만 30세	무주택된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자	혼인신고일	무주택된 날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통장 종류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사용가능	사용가능	사용가능 단, 85㎡ 이하에만 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전환 시 가능

■ 청약통장 체크사항

구분	내용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변경시 청약 가능 ②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 변경 (작은 주택 규모 → 큰 주택 규모) ③ 청약 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민영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야 청약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간 예치금 차액 충족
청약 접수 당일까지	①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 금액 차액 충족 ②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 금액 차액 발생시 차액 충족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

▣ 청약가점제 가점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상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적용	32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시 자동 산정됨)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 과거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 사실은 청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을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청약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특별공급 안내문

■ **분양일정**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일자	참고사항
특별공급접수	2020. 06. 29.(월) (08:00~17:30)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구분	구분	39	59A	59B	73A	73B	84A	84B	103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2	5	12	19	9	8	2	0	67	
	국가 유공자(국가보훈처 추천)	5	2	7	13	6	7	2	0	42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4	4	2	2	1	0	1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7	13	5	7	1	0	38	
	중소기업 근로자	4	1	8	13	4	6	2	0	38	
	북한이탈주민	2	1	2	2	1	1	0	0	9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5	6	20	32	14	16	4	2	10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4	5	20	32	13	15	4	2	10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44	17	61	96	41	47	13	0	319
		일반공급(25%)	14	5	20	32	13	15	4	0	103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수원시 거주자 우선 공급	8	3	12	19	8	9	2	1	62	
합계		124	47	173	275	116	133	35	5	908	

■ 특별공급 공통요건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예비당첨포함)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구분	내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분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확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내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도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수원시 및 경기도에 우선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함. 수원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 선정 후 남은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분.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나,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의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기타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또는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자녀가 없거나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구분	내용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본 청약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